

4. 변경 계약 시 임대보증금 인상분 납부기한은 '2021.12.05.(일)까지 이며,'2021.12.06.(월)일부터는 연체기간에 따라 소정의 연체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연체 요율 : 연 14%

5. 유의사항

가. 미납임대료, 관리비, 임대보증수수료(2021.10.30.(토)까지)등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셔야 하며, 미납 시 변경계약이 불가하오니 변경 계약 전 체납금을 미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나. 정해진 기간 내에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특약 제23조 제2항에 의거 불법거주배상금 및 손해금 청구 및 가옥명도소송 제기 등 계약상 불이익을 입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자가 다른 임대아파트에 중복입주 한 경우에는 변경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단, 퇴거확인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계약이 가능합니다.

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제한(채권(가)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및 질권 설정 또는 채권양도 등)이 있는 세대는 임대차 변경계약이 불가하므로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권리제한 등을 해소 하셔야 임대차 변경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임대차계약은 기존 임차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바.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작성을 허용합니다. [대리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각각의 신분증, 계약자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위임용), 인감도장, 위임장 제출]

사. 임대차 변경계약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세대 혹은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세대는 계약 기간 종료 익일인 2021.12.06. 전후 15일 이내까지 퇴거하셔야 하며, 임대차 변경계약 기간 내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해지신청 후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주택명도와 동시에 기 납부하신 임대보증금은 반환됨을 알려 드립니다.

※ 해지신청 시 구비서류 : 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명의 통장, 신분증

※ 해약관련 문의전화 : 062-233-3999 내선 505

아. 당사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 및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차 변경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대금 납부 계좌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계좌: 우리은행1005-603-350106

예금주 : 골드디움(주)

지정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함
(무통장 입금시 예시 101동 101호 홍길동 ⇒ 1-101홍길동)

골드디움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호 [직인생략]

【 문의전화 : 062-233-3999 (내선506) 】